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범위 조정 〉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8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4.
3. 회 부 일 : 2026. 5. 6.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대상인 기업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자기자본 대비 추가 신
용공여 한도 적용 대상에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기업의 인수·
합병,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신용공여
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u>기업</u> 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생략) ④ · ⑤ (생략)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 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 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u><신 설></u>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사는 제외한다)</u> ----- --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신설> ⑦ ~ ⑪ (생략)	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4.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⑦ ~ ⑪ (현행과 같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허용업무를 차등화한 제도임.¹⁾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77조의2²⁾), 자기자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2025. 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일반 증권사에 비하여 허용업무를 확대하고 있음(제 77조의3 등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거나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1] 자기자본 규모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허용업무

구 분		주요내용
3조원 (2013~)	기업신용공여 法 §77-3③1.	○ 기업에 대한 대출, 어음(CP제외) 할인·매입 * 자기자본 대비 기본 100% + 추가(중소기업·IB업무 관련) 100% 한도
	전담중개(PBS) 法 §77-3①	○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내부주문집행 令 §77-6①1.	○ 상장·비상장주식의 다자간 장외매매
4조원 (2017~)	발행어음 令 §77-6①2.	○ 만기 1년 이내 어음의 발행 / 단기금융업 인가도 필요 * 조달액은 기업금융에 50% 이상, 부동산에 '26년 15% → '27년 10% 이내 운용
8조원 (2017~)	종합투자계좌(IMA) 令 §77-6①3.	○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 * 조달액은 기업금융에 70% 이상, 부동산에 10% 이내 운용

(자료: 금융위원회)

- 우리나라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말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총 10개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3개사, 4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5개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2.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 한다)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업무

3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2개사임.

[표2] 2026년 3월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현황

구 분	8조원 종투자 (3개사)			4조원 종투자 (5개사)					3조원 종투자 (2개사)	
	미래	한투	NH	KB	키움	신한	하나	삼성	메리츠	대신
자기자본 (’25.12말, 조원)	10.4	11.2	8.6	6.7	6.1	5.7	6.1	7.6	7.5	4.1
3조원 지정	○ ’13.10	○ ’13.10	○ ’13.10	○ ’13.10	○ ’22.4	○ ’17.3	○ ’19.7	○ ’13.10	○ ’17.11	○ ’24.12
4조원 지정	○ ’17.11	○ ’17.11	○ ’17.11	○ ’17.11	○ ’25.11	○ ’25.12	○ ’25.12	○ ’17.11		
단기금융업 인가	○ ’21.5	○ ’17.11	○ ’18.5	○ ’19.5	○ ’25.11	○ ’25.12	○ ’25.12	×		
8조원 지정 (IMA)	○ ’25.11	○ ’25.11	○ ’26.3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정부는 2025년 4월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음.⁴⁾

○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이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권업의 양적 성장⁵⁾과 기업 자금공급 확대⁶⁾가 이루어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2025. 4.

5) 2013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16.7조원에서 62.9조원으로 276% 증가한 반면, 일반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15.8조원에서 23.5조원으로 48.4% 증가하였음. 또한 증권업 전체 순이익은 2014년 1.3조원에서 2024년 6.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에서 89.2%로 상승하였음.

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규모는 2013년 말 6.6조원에서 2024년 말 51.5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신용공여 중 기업 대상 신용공여의 비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48.4%로 상승하였음. 또한 발행어음 조달 규모는 2017년 말 0.9조원에서 2024년 말 41.5조원으로, 발행어음 운용 자산 중 기업금융 관련 자금공급 규모는 같은 기간 0.4조원에서 24.7조원으로 증가하였음.

졌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일반 증권사에 비하여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금융 중심의 차별화된 수익 구조⁷⁾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⁸⁾를 구축하지 못하여 기업금융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였음.

- 이에 정부는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운용규제를 개편하고, ②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절차를 개시하며, ③ 증권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표3]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

7)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B업무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치중되어 있으며(2024년 기준 IB업무 중 채무보증 비중 48.4%), 최근에는 IB업무 성장도 정체된 것으로 진단하였음.

8) 정부는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2024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채권 비중은 총자산의 11%로 일반 증권사(12%)와 유사한 수준이며,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중도 2024년 9월 말 기준 2.23%(12.8조원)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지분금융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구 분	주요내용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 <u>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u> ○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
종투사 지정	○ 20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4조원·8조원) 지정 ○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
증권업 제도정비	○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파생결합증권·사채 건전성 관리 강화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 부동산 NCR에 실질 리스크 반영 및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강화 ○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출 방식도 개선 ○ 종투사 건전성 비율 체계를 개편(중·장기)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운용규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업 자금 공급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금융회사를 기업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자본 대비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기업의 인수·합병(M&A), 기업채무구조 개선 및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신용공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과 그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대상을 기업 자금공급과의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 조정하고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금융회

사가 기업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가 일반 기업에 보다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⁹⁾

- 아울러, 자기자본 대비 추가 신용공여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이 중견기업과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 생산적인 분야에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고,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기업신용공여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이 법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

9)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20.8조원 중 0.7조원(대부업 0.2조원, 캐피탈 0.4조원 등)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였음.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이 경우 대부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할 경우 대통령령에서 대부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기업 자금공급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공급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한다"는 등의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자기자본 대비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인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가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 대비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있음.
- 개정안은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중견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역시 기업의 성장단계별 금

용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향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해 쏠림을 방지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공여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할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자는 제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보다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자기자본 대비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